

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비 고
제 7 조 신규계좌의 실명확인 ① (생략) ② 회사는 이용자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조합하여 처리합니다. 1.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: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. 이 경우 금융거래시점 및 실명확인시점에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합니다. 2. 기존 계좌활용: 타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이용자 명의계좌를 통해 소액이체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해당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③ ~ ④ (생략)	제 7 조 신규계좌의 실명확인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는 이용자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조합하여 처리합니다. 1. 실명확인증표 확인 :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제출한 모바일 신분증 정보를 확인합니다 2. 기존 계좌활용: 타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이용자 명의계좌를 통해 소액이체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해당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3. 그 외 영상통화, 생체인증, 타기관 확인 결과 활용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합니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	모바일, 제출 방식 추가 중복 내용 삭제 실명확인 방법 추가
-	부칙 제1조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	부칙 추가